

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안내

2021.3.1.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,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세부사항: 공단 홈페이지 > 정책센터 > 국민건강보험 > 건강보험의 이해 > 외국인·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

가입대상

체류자격 구분	적용 시기
유학(D-2), 초중고생(D-4-3)	· 최초입국 시 → 외국인등록일 ·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→ 재입국일
일반연수(D-4)	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※ 1개월 이상 출국 후 재입국 시 6개월을 재기산
재외국민·재외동포 유학생	입국 후 입학일로 취득 (재학증명서 제출 시)

보험료

- 월 보험료 : 39,540원 (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이상 납부자의 경우 제외)
☞ 소득금액 360만원, 재산과표 13,500만원 초과인 경우 경감 대상 제외
- (보험료 경감) ... 유학생 보험료 한시적 30%부과

현행(~ 2021.2.)	변경(2021.3. ~ 2022.2.)
기본 보험료인 131,790원의 50% 65,890원 부과	기본 보험료인 131,790원의 30% 39,540원 부과

보험급여 혜택

-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(즉시 혜택) 진료 받은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

(본인부담금) 요양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

외래진료: 건강보험 적용 비용총액의 30~60%

(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, 입원진료는 20% 적용)

※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 (예 미용목적의 수술 등)

- (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) 임신·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카드) 제공

· 신청절차: 병·의원에서 임신·출산 확인 후 공단지사 또는 금융기관에 국민행복카드 신청

- (건강검진) 일반검진 시기는 2년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구분 실시 ... 2021년도는 출생년도 출생자

보험료 체납하는 경우 불이익

- (보험급여제한) 체납시 납부기한일의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 까지 건강보험 급여혜택 제한
- (비자연장 등 제한) 보험료를 50만원이상 체납하거나, 기타징수금이 10만원이상 체납되면,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불이익 발생

가입절차

- 별도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
 - ※ 재외동포·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해야함
- 국내 체류지(거소지)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고지서 발송

- ※ 다만,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
(서울·경기·인천에 거주하는 경우,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신고)
 - 가족(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)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 - 체류지(거소지), 여권번호,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- ※ 휴대폰 번호를 공단에 등록하면 유익한 정보 제공 가능

- ※ **외국의 법령, 외국의 보험,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**

보험료 납부

- (납부기한) 매월 25일(다음달 보험료를 미리 납부)
 - ※ (예시) '21.10월 보험료 → '21.9.25.까지 납부 (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)
- (납부방법) 가상계좌, 자동이체, 공단 홈페이지·The건강보험(모바일앱) 등
-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신청 등 안내
 - 우편물 고지서 대신 이메일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
 -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기한(매월 25일)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
 - 환급계좌를 신청(고객센터, 지사)하면 환급금 발생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



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

☎ 1577-1000 / ☎ 외국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) 상담 033-811-2000